

1. 개정이유

수산물 이력제는 제도 도입('08년) 이후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임. 다만, 수협·대형유통사·양식장 등 수산물 이력제 참여 희망자들의 현장 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기록·관리 등 요구 사항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 이에 따라 수산물 이력제의 참여 요건 및 규제를 완화하여 이력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」 제26조 제4항과 이에 근거한 고시 ‘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[별표 3]’의 등록 주체를 규정한 표현이 상충하여 두 규정을 통일(안 제26조 제4항)

나. 전국적으로 동일한 유통망을 지닌 대규모점포·준대규모점포·체인사업 유통업자가 이력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개별 지점을 모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해야 하던 것을, 본점이 보유한 전 유통망에 대한 심사를 받고 이력추적 관리 능력을 인정받으면 개별 지점 등록 없이 본점만 등록하도록 하고자, 별도의 심사 방식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 신설(안 제26조 제5항)

다.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장·거래명세표에 이력추적 관리 등록의 표시를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명확화(안 제28조 제2항 제3호)

라. 양식 기간의 경우 개별 양식장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지자체·수협

등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추가적인 기록·관리 사항에서 배제(별표 3 제2호 가목 (1) 제5항 삭제)

마. 모든 양식수산물에 대해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을 기록·관리하도록 하던 것을, 안전성 조사를 받아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, 유기수산물 인증 등을 받은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을 기록·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단서 조항 개정(별표 3 제2호 가목 (1) 제6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, 「유통산업발전법」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,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5. 7. 7. ~ 8. 18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4항 본문 중 “생산자집단”을 “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인이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·준대규모점포·체인사업인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방법을 고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.

제28조제2항제3호 중 “것”을 “것(전자송장 및 전자거래명세표 또한 같다)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2호가목(1)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(1)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(양식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한다. 단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1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출하하는 경우 및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양식장,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양식장은 제외한다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(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) ① ~ ③ (생략)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인이 <u>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표본심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<신설> ⑤ ~ ⑦ (생략)	제26조(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----- -----, ----- -----.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인이 「<u>유통산업발전법</u>」에 따른 대규모점포·준대규모점포·체인사업인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방법을 고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. ⑥ ~ ⑧ (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
제28조(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 1. 2. (생략) 3. 송장(送狀)이나 거래명세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: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할 것 4. (생략) ③ (생략)	제28조(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<u>것(전자송장 및 전자거래명세표 또한 같다)</u>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